



의안번호	제 2014 - 21 호
보 고 연 월 일	2014. 11. 3. (제59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 I. 제84차 전체 회의 1
 - 1. 일시 · 장소 1
 - 2. 참석자 1
 - 3. 주요 안건 1
 - 4. 장물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1
 - 5.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10

- I. 제85차 전체 회의 21
 - 1. 일시 · 장소 21
 - 2. 참석자 21
 - 3. 주요 안건 21
 - 4. 업무방해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21

<별첨자료>

- 강동혁, “장물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 황병헌,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 강동혁, “업무방해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I. 제84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4. 10. 6.(월)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법원도서관 464호 멀티미디어실

2.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장물, 권리행사방해 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4. 장물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가. 유형분류 및 권고형량 범위

01 일반장물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10월	6월-1년6월	1년-3년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1년-2년	1년6월-3년	2년-4년

02 상습·누범장물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장물	1년-3년	2년-4년	3년-6년

나. 일반장물 유형 양형인자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2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 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과거 판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형인자 추출
- 장물범죄의 주된 본범인 절도범죄 양형기준을 주로 참조하고, 사기, 횡령·배임 등 다른 재산범죄에 대한 양형인자도 일부 참조

(1) 특별감경인자(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다수의 범죄들이 아래와 같은 정의규정으로 특별감경인자로 삼고 있음
- 정의규정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본범과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의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러한 인적관계에 따라 부득이 장물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장물죄의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정의규정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나 그 이외에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장물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2유형)

- 절도범죄 양형기준 참조
- 장물죄에 대한 고의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한 경우보다는 범행과정에서 뒤늦게 범행객체가 '특별재산'이라는 점을 알게 된 경우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

여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죄의 형을 가중하는 점과의 균형 고려

○ 정의규정

- 처음부터 대상 장물이 특별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물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범행 과정에서 뒤늦게 특별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2)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정의규정

- 형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로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위 친족관계가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친족관계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감경 행위인자로 반영한다.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횡령·배임, 사기, 공갈 등 재산범죄 양형기준 참조

○ 절도 범죄의 경우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처벌불원'만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는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절도가 재산적 피해 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범행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한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장물범행의 경우 그 자체로 직접적 위험성을 수반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장물 반환, 기타 금전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경우에는 사기 등 다른 재산범죄와 마찬가지로 이를 중요한 감경요소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3) 특별가중인자(행위)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조직적 장물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실무에서 중요한 가중적 양형 사유로 고려되고 있음
- 정의규정
 - 장물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장물범의 본질적 특성상 본범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점이 있으나, 범죄 자체의 속성을 넘어서서 구체적 사안에서 장물범이 장물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타당
- 정의규정
 -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장물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피해가 중한 것 뿐 아니라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까지를 특별가중인자로 요구하게 되면, 피해가 중하지만 공탁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는 범행 시의 피해의 정도에 대한 감안 없이 처음부터 특별감경인자로만 고려되어 부담 ⇨ 특별가중인자에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
 - 절도범죄의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가 일반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음
- 정의규정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에 대한 장물범죄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물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지난 양형위원 회의 논의결과, 장물범죄에서의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은 절도범죄의 '특별재산' 유형정의상의 개별범죄 분류와 달리 정하기로 함. 즉, 위 특별재산에는 모든 재산범죄를 본범으로 하고,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그 자체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만을 특별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함
- 그 결과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재산 중에서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장물', '단기 가격 급등 내지 품귀현상 발생 물건 등에 대한 장물', '중요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에 한하여 장물범죄의 특별재산으로 포섭
- 또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을 절도범죄와 같이 두 가지 하위 유형¹⁾

1)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으로 구별하지 않고 절도범죄의 '가치가 높은 재산'에 해당하는 범죄로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하되, 절도범죄의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해당하는 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한 바 있음

(4) 일반감경인자(행위)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횡령·배임, 사기, 공갈 등 다른 재산범죄 참조

(5) 일반가중인자(행위)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위 인자가 횡령·배임,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특별가중인자로, 공갈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일반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음

- 재산범죄의 특성만 가지는 횡령·배임,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재산의 대부분에 대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범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그러나 공갈의 경우 공갈에 의해 재산 대부분을 피해 보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기 등과 다르게 위 양형요소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였으며, 이는 장물범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장물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추구회복을 방해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물 또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특별가중인자로까지 삼는 것은 부적절

다. 상습·누범장물 유형 양형인자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1) 특별감경인자(행위)

- 일반장물 양형인자에서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2유형)’를 제외
 - 상습장물, 누범장물의 경우에는 위 두 가지와 같은 사안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움

(2) 특별가중인자(행위)

-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상습장물죄로 기소되는 사안의 대부분이 조직적 범죄이고 또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음
 - 일반장물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인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를 상습·누범장물에서도 각각 별개의 특별가중인자로 삼게 되면, 상습·누범장물 유형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특별가중인자 2개를 안고 출발하게 됨

- 장물범죄에서 결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위 두 인자를 상습·누범장물 유형에서도 특별가중사유로 삼되, 적정한 형량범위 도출을 고려하여 두 인자를 하나로 통합

□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

- 일반장물죄의 경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상습·누범장물죄에 있어서도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을 가중할 필요 있음
- 절도범죄 양형기준 참조

라. 집행유예 기준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 장물범죄 양형인자표를 기본으로 하되, 절도범죄, 사기범죄, 횡령·배임범죄 등 다른 재산범죄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하여 정함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 없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5.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가. 강요 유형

(1) 유형분류 및 권고형량 범위

01 강요 유형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강요	5년 ↓ / 7년6월 ↓ / 7년 ↓	-8월	6월-1년	10월-2년
2	중강요	10년 ↓	4월-1년2월	8월-2년	1년4월-3년
3	상습·누범·특수 강요	2년 ↑ / 3년 ↑	10월-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2) 양형인자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3유형 중 상습·누범 강요 유형은 제외)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인자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과거 판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형인자 추출
- 강요 유형의 유사 범죄군으로,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중 체포·감금 범죄 양형기준 등 참조

(가) 특별감경인자(행위)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강요는 기본영역의 최저 형량이 6월이므로, 폭행·협박의 정도 또는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에 포함시킴으로써 실무상 비중이 적지 않은 징역 6월 미만의 형을 감경영역에 적절히 포섭할 수 있음
- 정의규정
 -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요 범죄에 나아간 경우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음
- 정의규정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특별가중인자(행위)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폭력범죄, 체포·감금범죄 양형기준 참조
- 모두 가중 필요성 있는 양형요소들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강요 범죄에 있어서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가중구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함이 타당
 - 실무상 나체사진의 전송이나 탈의를 강요하는 등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벌을 저해하고 제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점에 비추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정의규정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합의강요)
 -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강요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실무상 폭력조직의 조직원 등이 잔혹한 폭행·협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교도소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극도의 수치심·협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등이 상당수 발견됨

○ 정의규정

-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강요된 행위의 내용,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실무상 13~14세의 여자청소년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요 범죄가 발견됨

(다)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조 제4호 자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포·감금 범죄에서도 특별가중요소로 반영되어 있음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상습적으로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자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포·감금 범죄에서도 특별가중요소로 반영되어 있음

(라) 일반가중인자(행위)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폭처법상 공동강요는 유사 범죄군과 같이 일반가중요소로 반영

(3) 집행유예 기준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참작사유는 체포·감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함
- 주요참작사유는 강요 유형의 양형인자표상의 양형요소와 유사 범 죄군인 폭력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양형기준을 참고함

나. 권리행사방해 유형

(1) 유형분류 및 권고형량 범위

0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5년 ↓	-8월	6월-1년	10월-2년6월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	7년 ↓ / 10년 ↓	4월-1년2월	8월-2년	1년4월-3년
3	강제집행면탈	3년 ↓	-8월	6월-1년	8월-2년

(2) 양형인자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 특별감경인자(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실무상 권리행사방해되는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재차 담보 제공 또는 인도하는 사안이 대부분인데, 할부금 또는 대출금을 이미 대부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경미한 사안이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반영되고 있음
- 강제집행면탈의 경우에도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낮아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사안 등이 존재함
- 정의규정
 -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관계 또는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피해품 자체의 가액보다 현저히 작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 은닉한 재산의 집행가능성 및 담보가치가 낮은 경우와 같이 은닉 등 행위 또는 허위채무 부담행위가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3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제외

-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의 경우 동기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사안을 상정하기 어려움

(나) 특별가중인자(행위)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실무상 재판절차를 악용하거나 허위의 권리양도 또는 채무부담 등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됨 ⇒ 가중구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함이 타당
- 정의규정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함에 있어 재판절차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완성되는 위태범이고,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되고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성을 넘어 실제로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거나 심각한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채권 회수 실패로 인하여 받은 심각한 타격을 양형이유로 반영한 사례도 존재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정의규정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 받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생계 또는 경영상의 위협에 처한 경우 (1, 3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2유형)**

- 중강요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강요 유형과는 달리,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은 중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6조)를 따로 소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중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영역에 포섭되도록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함이 타당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제외

- 권리행사방해 범죄유형은 본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보복이나 원한관계, 범행 자체를 즐기는 경우 등 특별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상정하기 어려움

(다) 일반감경인자(행위)

□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2유형(점유강취/준점유강취)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로 반영함이 타당함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은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도 양형기준은 경미한 폭행·협박을 일반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 점유강취죄의 폭행·협박은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므로 통상의 사례보다 경미한 사안은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3) 집행유예 기준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 일반참작사유는 강요 유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하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우발적인 범행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함
- 주요 참작사유는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양형인자표상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강요 등 유형과의 통일성을 고려함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II. 제85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4. 10. 20.(월) 14:40 ~ 18:4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박지선, 오기찬,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업무방해, 게임물, 손괴 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²⁾

4. 업무방해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가. 업무방해 유형

(1) 유형분류 및 권고형량 범위

01. 업무방해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5년 ↓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 양형인자

-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2) 이하 이번 제59차 양형위원 회의 논의 안건인 업무방해 범죄에 한하여 논의결과 정리함. 게임물, 손괴 범죄 논의결과에 관하여는 제60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 예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의 조직적 분담 또는 단체·다종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 자 /기 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행위 자 /기 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 특별감경인자(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업무방해 범죄 실제 사례에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감경한 경우가 적지 않음
- 정의규정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방해된 업무가 적법성 또는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점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업무방해의 실제 사안에서 행위태양·결과 중 어느 것이 경미하더라도 양형인자로 반영되어 실시되고 있음
- 업무방해에서는 행위태양·결과 중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태양과 결과로 중복 감경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둬야 타당함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정의규정
 -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외

- 업무방해죄는 재산범죄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나, 위험범으로서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실제 사례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곤란한 이상, 구체적 사안에서 '상당 부분 회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함이 타당함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포함

- 반면, 구체적 사안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

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는 양형인자로 반영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당 부분 회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판단이 쉬울 것으로 보이므로 포함함이 타당함

■ 정의규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특별가중인자(행위)

□ 범행의 조직적 분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판결에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 조직적(위계/위력)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해 범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험성이나 가벌성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임
- 폭력범죄, 체포·감금 범죄 등에서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음 ⇨ 업무방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범행의 조직적 분담'을 추가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제외

- 폭력범죄, 체포·감금 범죄 등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며, 범행의 주도자와 그렇지 않은 공범의 가벌성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가 가능
- 그러나 한편,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범행의 조직적 분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일 텐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게 되면, 조직, 단체·다중과 함께 하는 범행의 주도자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위 두 개의 특별가중인자를 안고 출발하게 됨

- 특히 업무방해 범죄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들 사이에서 분쟁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다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사기범죄 등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반드시 가해/피해, 선/악의 기준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또 업무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행의 조직적 분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한 경우'의 가중인자 반영에 더하여, 업무방해 범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 차례 더 가중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형량 도출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조직이나 단체·다중에 대하여 가중할 뿐 주모자에 대하여 동시에 가중하지는 않는 범죄도 다수 있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만을 특별가중요소로 둔 범죄 : 횡령·배임, 증권·금융, 약취·유인, 지식재산권, 선거, 조세 범죄 등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만을 특별가중요소로 둔 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폭력, 체포·감금, 사기, 공갈 등 범죄에서 위 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특별가중인자 포함
-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³⁾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나, 위 인자는 사실상 전과관계를 양형요소로 반

3)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영한 것으로 '행위인자'가 아닌 '행위자/기타 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전과 관련 양형인자들과의 관계 정립도 쉽지 않음. 또 위 인자는 소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서의 삼진아웃제를 염두에 두고 예외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업무방해 범죄에서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인자를 차용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임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하면서 동시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요소를 두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님
- 그러나 행위태양인 '위력 또는 위계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특별가중요소인 '범행의 조직적 분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와 중복될 여지가 있음
- 물론 '위력 또는 위계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 위 특별가중요소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이 위력 또는 위계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대부분 업무가 방해된 정도 또한 중할 것이고,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력 또는 위계의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가중요소로 삼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따라서 행위태양 측면에서의 '위력·위계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제외함이 타당함
- 정의규정
 -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 또는 그로 인한 피해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4) 업무수행 자체의 지장·마비로 포섭하기 쉽지 않은 피해(판결 사례상 공공이익, 공공의 안녕질서, 학생들의 입학기회, 면학분위기 등, 재산상 손해)를 반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주로 폭력성향을 띠는 범죄에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 요소로 삼는 동시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가중요소로 삼고 있음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폭력성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폭력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특별가중요소로 삼는 것이 타당
- 정의규정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정당하지 않은⁵⁾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⁶⁾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처리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인자 적용에 관한 특별규정을 둠
 - 살인, 성범죄, 폭력, 공갈, 체포·감금 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범행의 경우 처리에 관한 부가규정을 두고 있음
 - 위력형 업무방해범죄의 경우도 폭력범죄가 수반되거나 폭력성이

5) 이와 달리 정당한 경제적 대가 내지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게 됨

6) 판결 분석 결과, 국내 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공사를 한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허위시공실적을 신고하여 위계로써 해외건설협회의 실적 신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허위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돈을 취득한 점’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실시한 판결, 토익 답안을 전송받아 시험장의 부정시험의뢰인들에게 전송하여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 토익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범죄수익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실시한 판결, 학교의 행정실장과 교감이 영어교사 채용 특정응시자 채점결과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자 답안지를 고쳐 점수를 높여 임용되게 하여 위계로써 교사채용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이익 취득 없음’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실시한 판결이 있음

발현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과 동일한 처리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집행유예 기준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의 조직적 분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구 분	부정적	긍정적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업무방해 유형의 양형인자 및 공무집행방해,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공갈, 사기범죄 등의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함

나. 경매·입찰방해 유형

(1) 유형분류 및 권고형량 범위

02. 경매.입찰방해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경매·입찰방해	2년↓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건설 입찰방해	5년↓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2) 양형인자

-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행위 자 /기 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 특별감경인자(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정의규정

- 무모한 출혈경쟁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경우
- 긴밀한 사업관계에 있는 주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부득이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경매·입찰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즉시 성립하고, 실제 그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실제 현실화 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위험의 현실화 여부는 양형인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판결 분석 결과 사례로는 허위 유치권, 임차권 신고 후 철회한 경우, 경매취하로 종료된 경우, 실제 감정가 또는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경우, 입찰방해에도 불구하고 제3의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 등이 있음
- 한편 경매방해의 사례는 대부분 허위유치권, 허위임차권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입찰방해의 사례는 대부분 담합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행위태양이 전형적이어서 실제 사례에서 행위태양(위계 · 위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려움 ⇨ 업무방해 유형과 달리 행위태양의 정도(위계, 위력 경미)를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고 결과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만을 특별감경요소로 반영
- 정의규정
 - 범행으로 인한 경매지연, 저가낙찰, 특정업체의 선정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경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자, 채권자, 경락인, 입찰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 제외

- 경매·입찰방해죄의 보호범익은 경매와 입찰의 공정으로서 재산, 신체 등 개인적 범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전제로 하는 다른 개인적 범익에 관한 죄와는 성격을 다소 달리하는 점, 경매·입찰방해죄는 그 범행의 유형에 따라 경매 목적물 소유자, 채권자, 경락인, 경매참가자, 입찰시행자, 입찰참가자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를 발생

시킬 수 있어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형인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다) 특별가중인자(행위)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포함

- 경매·입찰방해죄의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부 공범의 제의에 따라 다수의 공범이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형태의 범행이 다수 있고, 그러한 가담정도 차이에 따른 실제 양형편차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포함함이 타당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위력형 경매·입찰방해의 발생빈도가 낮기는 하나 발생 사례가 있고, 그 대부분의 행위태양은 조직을 결성하여 담합 후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면서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경매참가를 방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중영역으로 포섭할 필요 있음
- 다만, 입찰방해죄의 대부분은 담합행위에 기한 것으로 조직적인 범행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특별가중요소로 볼 경우 대부분의 입찰방해죄가 가중영역에 포섭될 여지가 있으므로, 업무방해 유형과 달리 '범행의 조직적 분담' 부분은 배제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입찰방해죄 사례 중에는 같은 지역 동종업자들 사이의 담합이 상당기간 동안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관련 입찰을 방해한 사례들이 있고, 경매방해죄 사례 중에는 조직을 결성하여 계속적으로 경매현장

7) 인천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운영자들이 약 10개월 동안 61회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입찰을 방해한 사례, 조명장비 공급업자가 약 3년 동안 186회의 입찰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는 등으로 입찰을 방해한 사례 등

을 찾아다니며 위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음. 이러한 사례들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가벌성이 높으므로,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할 필요 있음

- 경매·입찰방해죄에서의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이 경매와 입찰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라는 표현은 삭제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경매방해의 경우 위험이 현실화 되어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거나, 경매가 상당기간 지연되어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채권자 등 다수 이해관계인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는 사례가 있음
- 입찰방해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비리로 인하여 부품 불량품의 하자가 현실화 되면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는 사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의 대형 국책사업과 같이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도 커 입찰 과정 등에 있어 특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례 등이 있음
- 위와 같이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되는 경우는 결과불법의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가중요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정의규정
 - 경매방해로 인한 저가낙찰, 경매지연 등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제외

- 경매·입찰방해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노리는 이욕범으로서 재산죄적

성질이 강하고, 위력형 경매·입찰방해의 발생빈도도 미미하므로 주로 폭력성향을 띠는 범죄에서 특별가중요소로 삼고 있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할 필요성 낮음

- 재산상의 이득을 노리는 외에 특별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사례도 찾기 어려움

(3) 집행유예 기준

■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경매입찰방해 유형의 양형인자와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범죄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함